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2. 20(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3. 29(수)
- 다. 상정일자 : 2006. 3. 30(목)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 3. 29)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분뇨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로 이관(안 제3조제2항제6호 바목 및 제9호 마목)
-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안 제4장 제11조 내지 제1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정호)

- 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 보육관련 업무, 토지관련업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붙임 : 정원관리 현황

다. 검토의견

-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정원관리 현황

○ 정원현황

(2006. 3월 현재)

구분	현정원 (A)	표준정원 (B)	보정정원 (C)	A-B	A-C	별도정원
인원	595	548	575	47	20	7

(※ 별도정원 관리현황 : 장기교육 2명, 도파견 2명, 공로연수 3명)

○ 정원승인 현황(총괄 : 5급 1명, 7급 7명, 8급 4명)

- 보육관련 업무 정원 : 1명(7급 1)
- 토지관련 업무 정원 : 2명(7급1, 8급1)
- 상하수도 사업소 정원 : 9명(5급 1, 7급 5, 8급 3)

※ 조례 개정문과의 정원수 차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를 위하여 2005. 12.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인원이 일시 만료로 자동 소멸된 것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
------	-----

제출년월일 : 2006. 2.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안 제2조)

- ▶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증 12명)
-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변동없음)

※ 정원승인현황 : 총 12명

- ▶ 보육관련업무 정원 승인 : 1명(7급)
- ▶ 토지관련업무 정원 승인 : 2명(7급 1명, 8급 1명)
- ▶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승인 : 9명(5급 1명, 7급 5명, 8급 3명)

※ 조례 개정문과 정원수 차이 사유

- 한시정원 기한만료(2005.12.31) : 본청 7급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2005.12.07, 2006.01.23, 2006.01.25)

라. 입법예고 : 2006.01.26~2006.02.14(20일간), 제출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바. 기타 :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96명”을 “60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5명”을 “596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총 계		607	596	11
정무직	소계	1	1	
	군수	1	1	
일반직	소계	475	469	6
	4급	4	4	
	5급	25	23	2
	6급	122	121	1
	7급	149	147	2
	8급	118	117	1
	9급	57	57	
연구직	소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1	1	
	지도사	22	22	
별정직	소계	17	17	
	6급상당	16	16	
	7급상당	1	1	
기능직	소계	90	85	5
	기능6급	3	3	
	기능7급	8	7	1
	기능8급	15	14	1
	기능9급	30	29	1
	기능10급	34	32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596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85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07명</u>-----, -----.</p> <p>1.----- : <u>596명</u></p> <p>2. (현행과 같음)</p>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 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별표 1]

2. 정원의 변동 내역

- 보육관련업무 정원승인 ⇒ 증 1명(7급)
- 토지관련업무 정원승인 ⇒ 증 2명(7급 1명, 8급 1명)
-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 ⇒ 증 9명(5급 1명, 7급 5명, 8급 3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561,203	
○ 인건비(100)	539,483	
- 기본급(01)	351,597	○ 본봉 5급 2,863,100원 × 1명 × 12월 = 34,357,200원 7급 2,276,800원 × 7명 × 12월 = 191,251,200원 8급 2,061,300원 × 4명 × 12월 = 98,942,400원 ○ 정근수당 162,275,400원 × 2/12 = 27,045,900원
- 수 당(02)	52,990	○ 초과근무수당 - 6,919원 × 12명 × 30시간 × 12월 = 29,890,080원 ○ 정액수당 . 가족수당 30,000원 × 12명 × 1.50 × 12월 = 6,48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 25년이상 130,000원 × 1명 × 12월 = 1,560,000원 - 10년이상-15년미만 60,000원 × 7명 × 12월 = 5,040,000원 - 5년이상-10년미만 50,000원 × 4명 × 12월 = 2,400,000원 . 대우공무원수당 - 7급 2,276,800원 × 7명 × 4.8% × 12월 = 9,180,050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 정액급식비(03)	18,720	130,000원 × 12명 × 12월 = 18,720,000원
- 교통보조비(04)	18,360	○ 5급 140,000원 × 1명 × 12월 = 1,680,000원 ○ 7급 130,000원 × 7명 × 12월 = 10,920,000원 ○ 8급 120,000원 × 4명 × 12월 = 5,760,000원
- 명절휴가비(05)	32,455	324,550,800원 × 1/12 × 120% = 32,455,080원
- 가계지원비(06)	54,092	324,550,800원 × 1/12 × 200% = 54,091,800원
- 연가보상비(07)	11,269	324,550,800원 × 1/12 × 1/24 × 10일 = 11,269,120원
○ 물건비(200)	21,72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0	60,000원 × 12명 = 720,000원
-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	100,000원 × 1명 × 12월 = 1,200,000원
- 직급보조비	19,800	○ 5급 250,000원 × 1명 × 12월 = 3,000,000원 ○ 7급 140,000원 × 7명 × 12월 = 11,760,000원 ○ 8급 105,000원 × 4명 × 12월 = 5,040,000원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